

##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
| 접수번호    | 접수일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| 7일  |        |      |    |        |        |
| 납 세 의무자 | ①성명(법인명)            | ②주민(법인)등록번호 |     |        |      |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③상호(대표자)            | ④사업자등록번호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⑤주소(영업소)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⑥전화번호<br>(휴대전화번호: ) | ⑦전자우편주소 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        |        |
| ⑧토지소재지  | ⑨용도/지목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⑩면적 | ⑪취득 일자 | 적용사유 |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공부상                 | 현황          |     |        | 연월일  | 사유 | ⑫ 적용조항 | ⑬ 적용면적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        |        |

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2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## 작성방법

### □ 납세의무자란

- ① 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상호(법인명): 개인사업자는 상호명,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.
- ④ 사업자등록번호: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,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.
- ⑤ 주소(영업소)
  - 개인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⑥ 전화번호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- ⑦ 전자우편주소: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(E-mail 주소)를 적습니다.

### □ 과세대상란

- ⑧ 토지소재지: 재산세 과세 토지의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.
- ⑨ 용도/지목: 공부상과 사실상 용도와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⑩ 면적: 해당 토지의 면적(㎡)을 적습니다.
- ⑪ 취득일자: 해당 토지를 취득한 일자(잔금완납일 등)를 적습니다.

### □ 적용사유란

- ⑫ 적용법령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2조 중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항을 적습니다.
- ⑬ 적용면적: 토지면적 중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면적을 적습니다.

□ 문의사항은 시(군·구) 과(☎ - 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